

#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71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안 제31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8조 내지 제9조, 제111조제2항, 제187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생략

○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1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1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이 봉 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서 근 식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복 수 (행정 2181)



## ❖ 관계법령발취서

### 【지방세법】

第8條 (受益等 事由로 因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地方自治團體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 特히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서는 不均一課稅를 하거나 또는 그의 一部에 對하여서만 課稅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を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중 보완할 내용 통보

1. 경기도 세정과12454(2005.8.19)호와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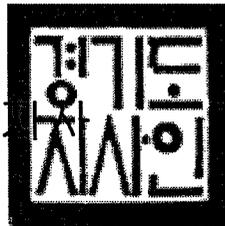
2. 위호로 시달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토지 재산세 과표경감) 내용중 다음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조례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면조례표준개정안 전문은 붙임 개정안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2005년도…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다음에 “부칙”을 삽입

○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을 “제2조(적용시한): 제29조는…”으로 수정

붙임 감면조례표준개정안 1부, 끝.

경기도



수신자 시군세무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지방세무주사 김민경 지방행정사무관 김민경 세정과장 전결 08/19  
이해성

협조자

시행 세정과-12501 ( 2005.08.19. ) 접수 세정과-5845 ( 2005.08.22.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대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4151 /전송 031-249-4189 / mk6319@kg21.net / 공개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을 조정 가능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당초 표준안	개정 표준안
<신설>	<p>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을 조정 가능</p> <p>부칙</p> <p>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적용시한) :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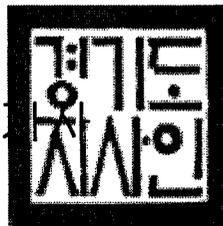
제목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3069(2005.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조정 가능)을 경감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하는 취지의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서달하오니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감면조례표준개정안 1부. 끝.

경기도



수신자 시군세무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지방세무주사 **김민경**

지방행정사무관 **최민성**

세정과장

전결 08/19  
**이해성**

협조자 지방행정사무관 **오동희**

시행 세정과-12454 ( 2005.08.19. ) 접수 세정과-5844 ( 2005.08.22.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4151 / 전송 031-249-4189 / mk6319@kg21.net / 공개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경감율 조정 가능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당초 표준안	개정 표준안
<신설>	<p>제29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p>
	<p>* 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을 조정 가능</p>
	<p>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